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721	
람	
"	



제457호 2021. 1. 29.(금)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1-135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_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
고성군	공고	제2021-180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고성군	공고	제2021-181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20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1-17호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
고성군	고시	제2021-23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_	•	제2021-26호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고시
0 2		(구만천-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 32
고성군	고시	제2021-2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확정 고시
- 0 2		
공	고	 _
0		
고성군	공고	제2021-159호 고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36
고성군	공고	제2021-164호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회		
·		
람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1-135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1. 29.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 정비

- 1)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 완화 및 상시·정시 개방화장실 구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2) 가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규정(안 제15조의2)
- 3)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안 제17조의2)
- 4) 과태료 기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별표1)

나. 법률 인용조항 불일치에 따른 정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인용 조항 수정(안 제 3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처: 환경과장 환경미화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환경과
 - 2) 전화: (055)670-2424, 팩스: (055) 670-24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 성군청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전화: (055)670-242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 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할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시설물의 운영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제16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중화장실등에 비치된 비품을 절취하는 행위
-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공중화장실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 4. 공중화장실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제18조 앞에 "제6장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삭 제> 제1장 총 칙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 (2) -----법」 제2조제6호 · 제7호 ·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관광단지 및 지 원시설 중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 4조제3항에 따란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 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 · 승인된 관광지 시설 전부 를 포함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삭 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 ----- 별지 제1호서식--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 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 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 운영 〈삭 제〉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 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 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 설〉

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 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 를 부착하여야 한다.

<u>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u> <u>〈신 설〉</u>

<u>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u> <u>〈신 설〉</u> <u>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u>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시설물의 운영시간 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삭 제〉

- 제17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중화장실등에 비치된 비품을 절 취하는 행위
 -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공보 제457호	고	성	군	공	보 2021년 1월 29일(금)
제6장 과태료 부과				3.4.5.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중화장실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 사한 행위 공중화장실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 외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제6장 과태료 부과					<u>〈삭 제〉</u>

■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현 행)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2021년 1월 29일(금)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브	부 과 금 액			
표 한 시 항	上/1元9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나액	
., _ , _	上八十岁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50	100	15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 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 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작성자: 환경과장 최 정 란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1. 1. 23.] 제21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u>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②시장·군수·구청장은 <u>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u>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 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	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 내용	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十分단	778717	

고성군 공고 제2021-180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9.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전문개정('20. 1. 7.)에 따라 그 시행일('20. 4. 8.)에 맞추어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의 시행일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595호 부칙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 2) 전화: (055)670-2503, 팩스: (055) 670-25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전화: (055)670-250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595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부칙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2595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부칙	조례 제2595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단</u> <u>서 신설〉</u>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균	·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ṭ	반 의견과 그	그 이유)		
-1) -1 A	찬반의견	みっ ね		۸-71 با ۵

게 겨 시.	찬반의견		수정안	스러비ㅇ	
개정안	찬성	반대	十分단	수정사유	

고성군 공고 제2021-181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 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1. 29.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 나. 도시교통과-75850(2020.10.21.) 「2021년은 교통사고 없는 원년의 해」 추진계획 수립
- 다. 도시교통과-3463(2021.01.15.) 「고성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추진계획 수립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운전자(만70세 이상)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나. (현행) 10만원권 교통카드 1회 발급 ⇒ (개정) 30만원권 교통카드 1회 발급

3. 의견 제출

-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2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처: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 2) 전화: (055) 670-4684, 팩스: (055) 670-2559
-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전화: (055)670-4686]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 개정(안) 1부

2021년 1월 29일(금)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를 "30만원 이내의 교통 카드 등을 한 차례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제2조(정의)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	
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 이	-30만원
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 지원	
할 수 있다.	

붙임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2021년 30,000천원 예산 편성(예상인원 100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도시교통과 최 대 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 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	·의견	수정안	스코zl O
71/8 21	찬성	반대	구경 한	수정사유

고성군 고시 제2021-17호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고성군 고시 제1999-392호(1999. 11. 25.)로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8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종합운동 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 능】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21. 고 성 군 수

- 1.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아래 참조
-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 초	비고
1 1	표기 번호		종류	ガハ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끄
변경	1	체육시설	공설 운동장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8번지 일원	246,184	중 1,708	247,892	경상남도 고시 제1999-392호 (1999.11.25.)	

2.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 구역계 확장 - A= 246,184㎡ → 247,892㎡(중 1,708㎡)	 야구장 설치로 인하여 통행량 증가가 예상 되어 봉림마을 진입로,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배수로 및 야구장 2면 계획으로 기 체육 시설 용지가 부족하여 구역계를 확장(2,384㎡)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종합운동장 국공유지 토지대장 등록사항 정정 등 676㎡ 감소로 조서상 착오정정

고성군 고시 제2021-23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2.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7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9일(금)

도로명주소 부여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서외리 189-7	고성읍 성내로78번길 30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18 0903	성내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78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2	고성읍 교사리 541-1	고성읍 송학고분로 85-71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문화재인 고성 송학동고분군으로 연결되는 길임을 반영	
3	하일면 학림리, 730-19	하일면 학림2길 62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일면 학림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4	하이면 덕명리 12	하이면 덕명5길 53-11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 덕명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5	하이면 덕명리 15	하이면 덕명5길 53-7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 덕명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6	대가면 유흥리 304	대가면 대가로 370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	
7	영오면 오서리 1008	영오면 오서2길 58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영오면 오서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8	동해면 용정리 84	동해면 용정1길 423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동해면 용정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9	거류면 송산리 250-1	거류면 송산로 325-20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 송산리)을 이용하여 송산로로 명명	
10	고성읍 이당리 900-2	고성읍 이당8길 175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고성읍 이당리)을 이용하는 여덟번째 도로	
11	고성읍 신월리 422-8	고성읍 신월로 61-24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여 신월로로 명명	
12	삼산면 삼봉리 700-1	삼산면 삼봉1길 173-22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 삼봉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13	삼산면 판곡리 517-1	삼산면 판곡2길 118-74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 판곡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14	삼산면 판곡리 527	삼산면 판곡2길 118-57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 판곡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15	동해면 장좌리 779-1	동해면 구절로 113-6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동해면 구절산이 위치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16	하이면 덕명리 220.221	하이면 덕명안길 35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덕명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삼산면 두포리 230-23	삼산면 두포5길 61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18	삼산면 두포리 1129-4	삼산면 두포로 511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여 두포로로 명명	
19	대가면 유흥리 296-6	대가면 암전1길 24-10	2021. 01. 22.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 암전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 번	관할구역	도로명주	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번	진원 1 년	도로명	건물번호	페시 고시크	अग्रिप्ता	1111
1	하일면	학림2길	62	2021.01.22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2	하일면	덕명5길	53-7	2021.01.22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3	하일면	덕명5길	53-11	2021.01.22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고성군 고시 제2021-26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기간 연장)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 2021. 1. 25. 고 성 군 수

1. 허가번호 : 고성2021-2호

2. 하천의 명칭 : 구만천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명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

-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공사용 가교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경남 고성군 배둔리 855-7번지 일원(12필지)

- 면적 : 4,21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 당초 : 2016년 02월 03일 ~ 2021년 01월 24일까지

- 변경 : 2021년 01월 25일 ~ 2021년 09월 30일까지

7. 문의처 :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055-670-2763)

고성군 고시 제2021-2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확정 고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 1. 28. 고성군수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천 원)

2021년 1월 29일(금)

회	계	별	경 정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00,119,966	598,766,666	1,353,300	0.23
일	반 회	계	522,908,502	521,555,202	1,353,300	0.26
특	별 회	계	77,211,464	77,211,464	0	0.00
	상 수 도 사	업	9,831,835	9,831,835	0	0.00
	하 수 도 사	업	7,838,053	7,838,053	0	0.00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5,023,000	5,023,000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	. 업	6,420,960	6,420,960	0	0.00
	중 소 기 업 육 성 자	급	5,792,500	5,792,500	0	0.00
	주 차	장	3,654,000	3,654,000	0	0.00
	수 질 개	선	248,692	248,692	0	0.00
	장 기 미 집 행 도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시 상	303,500	303,500	0	0.00
	농 어 촌 발 전 자 금 운	용	9,018,000	9,018,000	0	0.00
	사 회 복	지	1,996,432	1,996,432	0	0.00
	고 성 군 청 사 건	립	26,342,396	26,342,396	0	0.00
	공 공 실 버 주	택	742,096	742,096	0	순증

나.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천 원)

구						분	경	정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합						계			52	22,908	,502			52	21,555	,202			1,353,300	
지		н	}			세			;	36,012	,000			3	36,012	,000			-	-
세	9]		수		입			-	17,263	,740]	L7,263	,740			C	
지	방	Ţ	2	Ē	1	세			20	04,651	,000			20	04,651	,000			C	1
조	정	교	부	<u> </u>	급	바			-	19,800	,000]	19,800	,000			С	
보		3	<u> </u>			그			2.	19,072	,166			2]	19,572	,736			△500,570	
	국 :	고 1	見	조	급	나			16	63,827	,604			16	54,292	,704			△465,100	
	도 1	a) j	보	조	금	બંત			ĺ	55,244	,562			5	55,280	,032			△35,470	
보 전	선 수 일] 등	및	내	부 거	래			4	26,109	,596			2	24,255	,726			1,853,870	1
	보	전	수	2	입	바			4	25,853	,870			2	24,000	,000			1,853,870	
	내	부		ア		래				255	,726				255	,726				

○세 출

(단위: 천 원)

분	0	ŧ	•		부		문	경	정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ଠା	ļ
합							계			52	22,908	,502			52	21,555	,202			1,353,300)
일	반	공	•	공	ŏ	행	정			-	19,480	,073			-	18,400	,073			1,080,000)
공	공 경	질 서		및		안	전				3,210	,070				2,964	,870			245,200)
亚							육				3,678	,179				3,678	,179			(0
문	ই	ŀ	및		관		광			4	19,149	,727			4	18,656	,727			493,000)
환							경			4	12,614	,994			4	12,614	,994			(0
사		회		복	-		지			12	25,268	,164			1.	19,986	,064			5,282,100)
보							건			-	12,285	,772			-	12,285	,772			(0
농	림	해		야	2	<u>څ</u>	산			12	27,225	,702			12	28,142	,702			△917,000)
산억	업 •	중	소기] 업	및	에 너	기			-	15,747	,178			-	l5,747	,178			(0
亚	통	L	및		물		류			-	14,863	,181			-	l4,863	,181			(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	39,143	,489			;	38,843	,489			300,000)
예			비				비				5,000	,375			-	10,130	,375		Δ	∆5,130,000)
7]							타			(65,241	,598			(55,241	,598			(О

다. 특별회계

○ 세 입

(단위: 천 원)

구		분	경	정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합		계			7	77,211	,464				77,211	,464			0
지	방	세					-					_			-
세	외 수	입				9,674	,122				9,674	1,122			-
지	방 교 부	세					-					-			-
조	정 교 부 금	ド													-
보	조	급				6,900	,027				6,900),027			0
	국 고 보 조 금	누				5,512	,926				5,512	2,926			0
	도 비 보 조 금	냥				1,387	,101				1,387	7,101			0
보 전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6	60,637	,315				60,637	7,315			0
	보 전 수 입	능			4	18,043	,677				48,043	3,677			0
	내 부 거	래]	L2,593	,638				12,593	3,638			0

○세 출

(단위: 천 원)

분	0]:	:			부		문	경	정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합							계			ı	77,211	,464			,	77,211	,464			0
일	반	공	•	공	ઇૃ	냉	정				26,342	,396				26,342	,396			0
공	공 질	<u></u> 서		및		안	전					-					-			0
교							육					-					-			0
문	화		및		관		광					-					-			0
환							경				17,860	,528				17,860	,528			0
사		회		복	<u>_</u>		지				1,954	,988				1,954	,988			0
보							건					-					-			0
농	림	해		야	f	È	산				9,018	,000				9,018	,000			0
산	업 •	중	소기	기 업	및 c	에 너	기				12,213	,460				12,213	,460			0
교	통	-	및		물		쀼				3,654	,000				3,654	,000			0
국	토	및	지	œ	;	개	발				6,068	,596				6,068	,596			0
예			비				비					-					-			0
기							타				99	,496				99	,496			0

고성군 공고 제2021-159호

고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9. 고 성 군 수

- 1. 공고기간: 2021. 1. 29. ~ 2021. 2. 19.(21일간)
- 2. 공고방법: 고성군보 및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goseong.go.kr)
-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원인자부담금),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25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 5. 대상지역 : 고성군 하수처리구역 내
- 6. 공고내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1,632,850원/㎡
 - 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2,748,000원/㎡
- 7. 시행일 : 2021년 2월 22일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2021년 1월 29일(금)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 임)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1.2.19.(금)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팩스 : 055-670-4409
- 문 의 처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055-670-4423)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٥	리 :	 견	제	춛	서	
1. 행 정 약	하수	-도 원	인자부딩	남금 단위	l단가 변경		
2. 의견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3. 의	견						
4. 7]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02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공고 제2021-164호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0번지 외 5필지의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6. 고 성 군 수

- 1. 사업예정지(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0번지 외 5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O 종류: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사업 조성공사
 - O 명칭: 고성군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 3.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8,670㎡
 - 건축면적 / 연면적: 1.700.24㎡ / 7.185.34㎡(지하 2.674.53㎡, 지상 4.510.81㎡)
 - O 건축물 개요: 1개동, 지하 2층, 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O 건축물 용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 4. 사업시행기가: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0. 31.
-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 성명: 고성그린파워㈜ 대표이사 김학빈

- 6.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1. 1. 26. ~ 2021. 2. 9.(14일간)
- 7. 열람장소: 경남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혁신담당(055-670-2703)으로 문의바랍니다.
- ※ 편입 토지조서(고성군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구분 소	소레키	ગામો	지목	대장면적 (m²)	편입면적 (m²)		관계인			ען די	
干证	소재지	지번	시작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계				17,523	8,670						
1	고성읍 신월리	657-9	잡종지	225	225	기획재정부					
2	고성읍 신월리	657-14	잡종지	376	376	고성군					
3	고성읍 신월리	산10	임야	16,259	7,710	고성군					
4	고성읍 신월리	산13	임야	312	150	박재수	수남동				미등기
5	고성읍 신월리	산13-1	임야	153	11	박재수	수남동				미등기
6	고성읍 신월리	산14	임야	198	198	신도준	진양군 평거면 우수리				미등기